

2022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

‘스마트국토엑스포’, ‘디지털 지적의 날’ 행사에 맞춰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·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5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
I .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

1. 추진목적

-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산업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·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

2. 기본방향

- 국내외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요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·포상
-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공로자를 우선 선발
-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,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발굴·포상
- 훈·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 또는 괄목할만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,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

II. 포상개요 및 추천

1. 포상시기 및 장소

- 일시: '디지털 지적의 날'('22.9.16), '스마트국토엑스포'('22.11.2) 행사 시
 - *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장소 : 미정

2. 포상종류 및 규모

- (종류)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 등
- (규모)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 예정

3. 포상후보자 추천

가. 추천대상

-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발전에 유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(기관)
 - * (개인)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분야의 사업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, 공간정보기술자,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
 - * (단체) 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 분야 사업자 또는 단체

나. 추천기간 : 2022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일로부터 2022. 5. 23(월)까지

다. 제출방법 : 공문, 이메일(eunwoo771@korea.kr), 우편(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 접수

- * (우편 제출처)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

Ⅲ. 포상 및 표창기준

1. 포상 및 표창기준

- 중복수여의 금지(상훈법 제4조) 준수
-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(동법시행령 제17조의2) 준수
- 「2022 정부포상 업무지침」, 「장관표창 업무지침」 준수

2. 수공기간

- 추천일('22.5.23)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3.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*로부터 추천일** 기준

* 수여일 :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

** 추천일 :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

가.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
나.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다.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라.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- 마.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바. 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,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, 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 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자는 받을 수 없음

4. 추천제한

□ 일반국민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2) 형사처분

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마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바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
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
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
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
추천할 수 있음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
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
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
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
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
경우 추천 가능

7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
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
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
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
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
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□ 공무원

1)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2) 형사처분

가)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
〈주요비위란〉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

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
◆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

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
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
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
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
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
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
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
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
4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3)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
가)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
나)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
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
4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 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
*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

5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6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7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□ 단체

- 1)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2)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- 3)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
*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
- 4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

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 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* 단, 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)의 경우,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

- 5) 수사 중이거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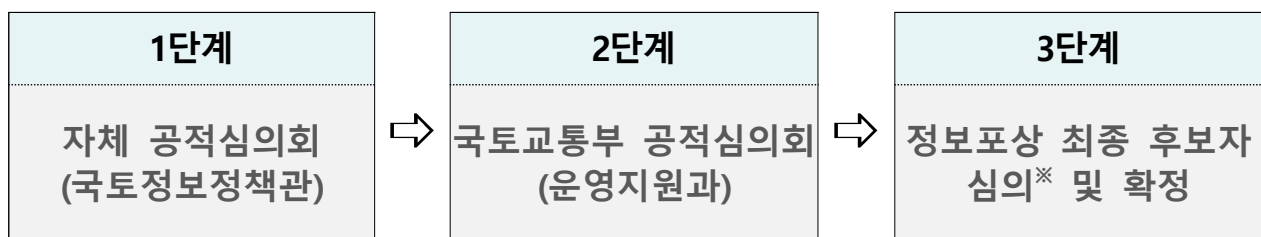
IV. 후보자 공개 검증 및 대상자 선정

□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

- (검증대상) 정부포상(장관표창 제외) 후보자 전체
- (검증방법) 후보자 주요 공적 등을 광화문1번가, 국민생각함,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
 - * 개인정보가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에 공개됨을 사전 고지 및 동의서 징구
- (검증결과 활용)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당사자 소명,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
 -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, 수사진행,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
 - *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·검찰·경찰의 조사(수사)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(☎ 044-201-3464)에 즉시 통보

□ 대상자 선정

- (대상자 선정) 단계별 심사·검증을 통해 공적 우수자를 선별



※ 차관회의 심의 → 국무회의 심의 → 국무총리 결재 → 대통령 재가 확정

① 공무원 및 학계 : ‘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’ 1부(서식3)

* 추천기관 인사담당자(담당관)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

② 일반국민 : ‘인사기록카드 사본’ 1부

*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(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)

*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③ 공통사항**○ ‘정부포상 추천자 현황’ 1부(서식 1)**

*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

○ ‘정부포상대상자 명단’ 1부(서식 2)**○ ‘공적조서’ 1부(서식 4)**

*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(조사자 소속·직위 기재),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

○ ‘정부포상(장관표창 포함)에 대한 동의서’ 1부(서식 5)**○ ‘정부포상(장관표창 포함) 후보자 추천서’ 1부(서식 6)**

(서식 1)

정부포상(장관포함) 추천자 현황(민간인·재직공무원·단체)

○ 포상명 :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

① 소속	직위 (직급)	성명 (단체명)	추천 훈격	② 공적 기간	추천제한 조회결과				⑦ 징계 (연도·종류, 사면·말소)	⑧ 물의야기 (일시·내용)
					③ 범죄경력	④ 산업재해	⑤ 공정거래	⑥ 임금체불		
					“국토부에서 일괄조회” 기재하지 말 것					
《예시》										
○○회사	사장	이몽룡	포상/장관	30-02					-	언론보도 (06.7.1)
○○회사	부장	성춘향		20-02					-	무
○○○○도 ○○시	지방행정 주사	허생		25-02					‘95 건책 (사면)	무

*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

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,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,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, 징계, 수사개시 기타 공·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.

2022. ○ ○ . ○ ○

작성자 (직위) (직급) (성명) (서명)

확인자 (직위) (직급) (성명) (서명)

《 작성시 참고사항 》

-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, 소속기관명, 주민등록 도로명주소(로, 길, 읍면) 또는 단체명 표기
※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, 주식회사·(주)의 표기를 명확히 함
-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(재직)기간

※ ③ ~ ⑥ 부분은 국토교통부 일괄조회

-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
※ 조회기관 :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(☎ 02-3150-1960~61)
 -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(산재다발, 중대재해, 산재미보고, 중대 산업발생사고)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
※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-202-7693)
 -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
※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-200-4127)
 -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
※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-202-7537)
-
- ⑦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상습·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
※ 국세 : 국세청 징세과(☎ 044-204-3028)
관세 : 관세청 세원심사과(☎ 042-481-76460)
지방세 :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(☎ 044-205-3815)
 - ⑧ 징계처분·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
 - ⑨ 감사원·검·경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 등 공사 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
※ 위 ③~⑨ 작성 시 조회·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“ - ”로 표기
조회·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“무”로 표기

(서식 2)

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

☐ 정부포상(장관표창) 대상자 명단 (00명)

연번	소 속	직 위 (직 급)	성 명 생년월일	추천훈격 (재직기간)	비고
1			박○○ (朴○○) 00. 00. 00.	장관표창 (00년00월)	
2			박○○ (朴○○) 00. 00. 00.	장관표창 (00년00월)	
3			박○○ (朴○○) 00. 00. 00.	장관표창 (00년00월)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
□ 정부포상(장관표창) 대상자 공적요약 (00명)

연번	소속	직급	성명 생년월일	재직 기간	추천 훈격	징계 기서훈	공 적 개 요 (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)
1	(주) ○○ ○○○	부장	○○○ (○○○) 00.00.00	00년 00월	정부 포상	없음	▪ 전문기업인으로 공간정보 분야 발전 및 활성화에 노력 * 최근 3년간 매출액 ???억원 ▪ 공간정보 분야 벤처회사 설립하여 청년 IT일자리 창출 * 3년간 GIS전문인력 ???명 채용 ▪ 공간정보 분야 기술개발에 기여 * GIS 정밀도 향상 등 특허출원 ??건, 7대지하 시설물 조사 및 탐사
2	○○(주)	차장	○○○ (○○○) 00.00.00	00년 00월	장관 표창	-	※ 공적심사 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므로, 공적사항 중 정량적 실적 위주 요약정리 철저 요망

(서식 3)

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

1) 소속기관		2) 직 위		3)직 급	
4) 성 명	한글	5)생년월일		(만 세)	
	한자	6)군번(군인)			
☒ 재직자 ☐ 정년퇴직 ☐ 명예퇴직 ☐ 의원면직 ☐ 기 타					
공무원의종류					
재 직 기 간		12)특 정 직		~ (년 월 일)	
8) 일 반 직	~ (년 월)	13)교 원		~ (년 월 일)	
9) 별 정 직	~ (년 월)	14)군 인		~ (년 월 일)	
10)기 능 직	~ (년 월)	15)군 무 원		~ (년 월 일)	
11)고 용 직	~ (년 월)	16)기타()		~ (년 월 일)	
합 계 ㉑		년 월 일			
17)제외기간					
		직위해제 : ~ (년 월 일)			
합 계 ㉒		년 월 일			
18)실 재직기간(㉑-㉒) 년 월 일 19)추천훈격					
20)징계,형벌					
종 류		일 자		21)과거표창	
해당없음				(모범총리표창이상)	
포 상 명		수여일자			
22) 작 성 자(인사담당자)		23) 확 인 자(인사담당관)			
직급	성명	(인)	직급	성명	(인)
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.					
20 년 월 일					
24) 기 관 명 : (직인)					

(서식 4)

공 적 조 서

(앞쪽)

성 명	(한 자)		
주민등록번호	-	군번(군인인 경우)	
		국적(외국인인 경우)	
주 소	※ 도로명주소로 기입(주민등록지)		
직 업	※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	소 속	※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
직 위		직급·계급	
추천 훈격(勳格)		추 천 순 위	
공적 분야	포상 / 장관표창	공 적 기 간	※ 10년 6개월인 경우 '10-06'으로 기재
공적요지(70자 이내) (작성예시) ○로 기여함 ※ <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(띄어쓰기 제외) 이내로 작성 요함 > - 반드시 “~로 기여함”으로 끝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. -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(비전문가)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 주십시오.			
조사자(추천부서 또는 추천기관)			
소 속			
직위(직급·계급)		성 명	(서명 또는 인)
위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(추천부서장 또는 기관장) (관인)			

주요 경력	
연 월 일	이력사항
과거 포상기록 (훈장 · 포장 · 표창별로 기록)	
수여일(연 월 일)	
	※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(훈 ·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00부장관 등 기재할 것)
공적 내용(※ 훈·포장,대표·국표는 반드시 2,000자 이상 기재)	
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○ (제목) - (내용)..... ○ (제목) - (내용)..... <주의사항> -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,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,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수상자로 선정 되시면 행정안전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. 이때 2,000자가 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2,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고, 표, 그림, 특수문자, 기호 등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만 2,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.	

※ 공적조서 작성요령(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공통 적용)

-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「수여증명서」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
 -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
 - 특히, 공적내용 작성 시 공간정보 발전 기여사항을 중점 작성
 -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
- *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
- 공적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가 본인의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
- 추천훈격란은 ‘정부포상’ 또는 ‘장관표창’으로만 기재하며,
조사자는 추천부서장, 추천자는 기관장임

(서식 5)

정부포상(장관표창 포함)에 대한 동의서

(정부포상 민간인 후보자용)

☐ 포상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※ 도로명주소로 기입	직위(급)	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2. .

성명 (서명)

〈개인정보 제공 동의〉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 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<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「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」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

추천인	성명* (단체명)		관계*	(피추천인의)
	연락처*	(휴대전화/전화)		
	전자우편			
피추천인 (포상후보자)	성명* (단체명)		생년월일	
	주소*		근무처 (직업)	
	전화*	(자택) (사무실)	휴대전화*	
	주요경력 (기간)	. (~) . (~) . (~) 현 (~)		
공적내용* (여백부족시 별지작성 제출)				

*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(단,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)

《 추천시 유의사항 》

- ① 피추천인(포상후보자)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근무처, 전화번호(자택·사무실) 등 인적사항, 주요경력,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
-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·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피추천인의 성명,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
-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
- ⑤ 필수 기재사항(*표시)
 - 추천인 : 성명(단체명), 관계(피추천인의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
 - 피추천인 : 성명(단체명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, 공적내용